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2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모경중 · 박정현 · 박선원
김문수 · 서영석 · 안태준
남인순 · 복기왕 · 양부남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고유의 사무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외의 특별정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현행 조항 외에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소속 公務員 및 派遣”을 “과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관할하는 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등에 지급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條의2(特別精勵金 지급) ① 각종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 및 派遣 · 委囑公務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舉 및 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관할하는 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 등에 지급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 ③ (생략)	第19條의2(特別精勵金 지급) ① ----- ----- -----<u>과건</u>----- ----- ----- -----. ② ----- ----- - ----- ----- ----- -----<u>부담한</u> <u>다.</u> ③ (현행과 같음)